

#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23. 9. 6.

발 의 자 : 대구광역시의회  
운 영 위 원 장

## 1. 개정이유

가. 국민권익위원회 「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  
(’23.7)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중립성 강화를  
위해 자문위원에 대한 기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제척·회피·기피 위원을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(안 제111조)  
나. 윤리심사자문위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위원 기피 규정 신설(안 제112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 
나. 관계법령 : 붙임(「지방자치법」)  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1조제4항 중 “제척되거”를 “제척·기피되거”로 한다.

제112조의 제목 “(위원의 제척·회피)”를 “(위원의 제척·회피·기피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1조(자문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112조에 따라 <u>제척되거나 회피한</u>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.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	<p>제111조(자문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제척·기피되거나</u>----- -----.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2조(<u>위원의 제척·회피</u>) ① ~ 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12조(<u>위원의 제척·회피·기피</u>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u>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- 제6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-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